

제2873호
2021.10.21.

발행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 홍 보 전 산 과 장 김 영 혜
 전화 : 3396-4951
 (http://www.junggu.seoul.kr)

선	기 관 의 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1-793호 :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1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793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의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수수료 납부시 수입증
지 우선 규정을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수 있도록 개정하고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감면지원 확대 요청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를 수수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수수료 등 납부 시 수입증지 사용 우선 규정 정비(안 제4조)
 -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도록 개정
- 나. 수수료 감면 대상 추가(안 제6조)
 -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세무1과장, 전화: 02-3396-5142, FAX: 02-3396-8703, E-mail:
leeyj@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2021 - 호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는 현금, 수입증지,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6조 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납부방법)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납부방법) 수수료는 현금, 수입증지,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12. (생략) 〈신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12. (현행과 같음) 1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